

경운대학교 외국인학생및재외국민학생수학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 수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“외국인학생”이라 함은 국적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이외의 자로서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, “재외국민학생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할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자격)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학사과정의 경우 외국에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.
2. 대학원과정의 경우 외국에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 교육과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과 국내·외 정규 대학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.

제4조(전형)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은 학생의 지원 대학에서 이력, 인품, 건강 등과 한국어 및 수학에 필요한 교과목의 필기, 구술,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전형한다.

제5조(입학 등) ①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의 입학(조건부입학 포함)은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 특별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② 필요한 경우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으며, 조건부로 입학된 학생은 수학 결과에 따라 수학능력이 인정된 경우 정규과정 입학신청을 받아 입학할 수 있다.

③ 외국정부지원 유학생이 1년(어학)+2년(정규)과정 및 1년(어학)+4년(정규)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우리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에서 한국어과정을 이수 할 수 있으며, 우리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에서 한국어과정 이수 기간 동안 학사과정의 재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.

④ 외국정부지원 유학생이 1년(어학)+2년(정규)과정 및 1년(어학)+4년(정규)과정으로 입학한 경우 우리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의 한국어과정 이수 기간 동안 학사과정의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과정 이수) 우리대학교 본교 재학생 기준을 따른다.

제7조(정원)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의 입학은 정원 외로 선발한다.

제8조(준용규정)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운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